

Newsletter November, 2022



ICR



목 차

1. (주)ICR 배터리시험센터 장비 가동 개시
2. 지정시험기관협회 무선분과 기술협의회 참석
3.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4. ESG 구조와 ISO 경영시스템 관련성



(주)ICR 배터리시험센터 장비 가동 개시

▣ (주)아이씨알 평택 배터리시험센터는 9월부터 셋업된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시험에 대해서 고객사 분들께서도 만족하셨고, 배터리 시험센터의 서비스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 열폭주 시험

리튬 파우치 셀에 대해 열폭주 시험은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집진설비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주)ICR 배터리시험센터 장비 가동 개시

▣ UN ECE R136 진동시험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팩의 UN ECE R136 homologation을 위한
진동시험을 진행했습니다.



▣ 상기의 시험 뿐만 아니라, 배터리 시험 및 인증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ICR 배터리시험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배터리시험센터 / 양 철 호 팀장

T. 02-6351-9003 / yangch@icrqa.com



지정시험기관협회 무선분과 기술협의회 참석

▣ 1. 일정 및 참석자

- ▶ 일정 및 장소 : 9.22. ~ 23. / 전파시험인증센터 유·무선시험실
- ▶ 참석자 : 국립전파연구원(유충현, 표유선, 강병준), 알에프코어 등 5명

▣ 2. 시사점 및 추가 논의 사항

- ▶ 범용 스펙트럼 분석기로는 발사전파의 최대 주파수 편이*를 정확하게 측정 불가하여 Chirp 대역폭에 대한 산정 및 정의 규정 필요

* 이론상 최대주파수 편이는 chirp 대역폭의 1/2

- ▶ 드론탐지레이더는 주파수대역 내에서 임의의 주파수를 발사하므로 일반적인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추가 논의 필요
- ▶ 수입 장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장비 출력 Port 노출이 불가피하나 수입업체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여 추가 논의 필요
- ▶ 8.5~8.6 GHz(펄스방식) 및 15.7~17.2 GHz(FMCW) 대역 장비에 대해 확인시험을 하여야 하나 시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추가 논의 필요

☎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 손민기 전임연구원
T. 070-5081-0023 / thsalsrl@icrqa.com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1.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란 ?

▣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상호인정협정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의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 인정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 ▶ 2)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2.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

☐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체결국가	 미국	 캐나다	 EU	 영국	 베트남	 칠레
협정단계	1단계	1,2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체결일자	'05.5월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10.10월	'19.8월	'06.1월	'08.6월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3.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별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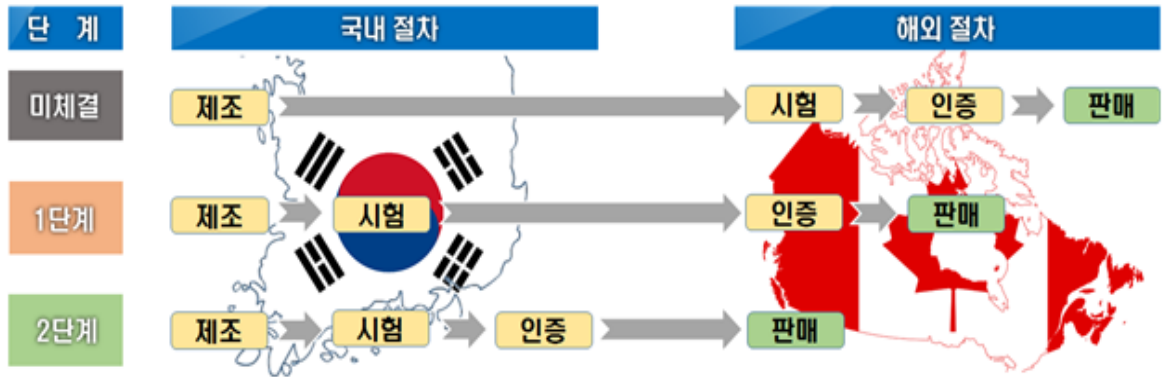
국가별	시험분야	대상품목	
1단계	미국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무선조정기, RFID 등
		EMC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기기 등
	EU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영국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베트남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헤드셋, 무선LAN 등
		EMC	노트북, 서버, 전기기기 등
	칠레	유선, 무선, EMC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미국(FCC) 시험성적서로 시험대체
	캐나다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중계기, 블루투스 등
		EMC	TV, 모니터, 전기기기 등

4.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에 따른 전파인증 대상제품

	무선범위1 (비면허 무선기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조정용 완구 등		무선범위2 (면허 개인 이동 무선기기) 휴대폰 등 무선통신 장비
	무선범위3 (면허 일반이동 및 고정용 무선기기) 무선기, 중계기, 디지털 스캐너 수신기 등		무선범위4 (면허 고정용 마이크로웨이브 무선기기) 5G 기지국 장비 등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5.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



▣ **(1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수입 국가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 **(2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국내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MRA 1, 2단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구분	국내(수출국)	국외(수입국)
1단계	제조업체 (신청인)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발급)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 판매
2단계	제조업체 (신청인)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발급)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판매

* 국내시험기관 : 국내 MRA 지정시험기관

** MRA 2단계 인증기관 : 전파시험인증센터(이천) (TEL. 031-644-7530~5)

6.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이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에 미치는 효과

▣ 국가 간 1,2 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인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 시험인증비용 부담 완화
- 시험인증 기간 단축
- 한국어로 절차진행 등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7. 외국 정부에서 승인한 MRA 지정시험기관 현황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에서 화면 중앙 "업무안내" 를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좌측 "적합성평가제도-MRA안내"를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부의 "외국 정부에서 승인한 한국 시험기관" 에서 확인

※ (주)아이씨알 - 지정번호 "KR0165"의 MRA 지정시험기관임

KR0165	(주)아이씨알	미국 M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art15 Subpart B o Part16 o Part15 Subpart C o Part15 Subpart E without DFS o Part15 Subpart E with DFS o Commercial Mobile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22(cellular), Part24, Part25(below 3GHz), Part27 o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22(non-cellular), Part90(below 3GHz), Part95(below 3 GHz), Part97(below 3 GHz), Part101 (below 3GHz) o Part96 o SignalBoo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20, Section 90.219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7번길 112(학운리) 전화: 02-6351-9002	http://www.icrqa.com
		캐나다 M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SS-Gen, RSS-130, RSS-132, RSS-133, RSS-134, RSS-139, RSS-199, RSS-210, RSS-216, RSS-247, RSS-248, RSS-252, RSS-102(RF Exp.)^{1)IEAB} 		

☎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 박 명 철 책임연구원
T. 070-5083-2646 / pmc@icrqa.com



ESG 구조와 ISO 경영시스템 관련성

■ ESG란?

투자 의사 결정 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ESG 시장 동향

이미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에서 연기금이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낸 기업들이 ESG에 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러 기업으로 퍼져 정착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우리 기업도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ESG 구조와 ISO 경영시스템 관련성

■ ESG 구조

환경(E)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 에너지 효율
- 생태계 보호

사회(S)

- 근로자 안전
- 작업환경
- 고객 만족
- 지역사회 관계
- 데이터 보호

지배구조(G)

- 기업윤리
- 공정경쟁
- 로비 및 정치 기부
- 이사회 및 감사회 구성
- 준수

■ ESG 구조와 ISO 경영시스템 인증과의 관련성

ESG 구조에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가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ISO 표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ESG 구조와 ISO 경영시스템 관련성

■ ESG에 대한 ICR의 강점

- ▶ (주)ICR은 ESG에 대한 시장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및 국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ICR은 ESG에 대한 시장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ISO 인증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ISO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기업이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ICR은 **기업에서 형식적으로 준비하며 시간을 소비하는 인증이 아닌, 기업의 ESG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SO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처

시스템인증본부 / 이재민 전임연구원
T. 070-5083-2612 / lee2750@icrqa.com



www.icrqa.com

ICRO-31/R20161125 본 문서는 법률 제 14088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ICR의 지적 자산으로 불법 편집 및 복사를 금합니다.

Address :3611, Hagun-ri,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 South Korea (10048)

Company Id No : 110111-243147
Tax & VAT Id No : 105-86-35114

Tel : (+82)2-6351-9001~5 / Fax : (+82)2-6351-9007
Home page : www.icrqa.com